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Q&A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관련 주요 질의에 대한 안내입니다.

Q1.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인가? 보수교육으로 대체 가능한가?

A1.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의료인 보수교육과 상관없이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는 별도의 법정의무교육(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과는 별개의 법정의무교육입니다.

Q2. 개설자(한의사)가 직접 받아야 하는가?

A2. 개설자(한의사)의 직접 이수도 가능하며, 소속 담당 직원(봉직의 또는 담당 직원)이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 협회 온라인 교육시스템은 한의사 회원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Q3. 매년 받아야 하는가?

A3.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을 제출한 후(의료기관 개설 후) 1년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추가 교육을 해야 합니다.

Q4. 교육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

A4. 교육은 크게 온·오프라인으로, 교육기관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개설자(한의사)가 직접 온라인으로 수강 및 이수가 가능합니다. 환경부 지정 타 교육기관인 한국환경보전원에서는 '오프라인(집합교육)' 또는 '온라인'으로, 한국폐기물협회에서는 '온라인'으로 개설자(한의사) 및 소속 담당 직원의 수강 및 이수가 가능합니다.

Q5. 교육수수료는 어떻게 되나?

A5. 환경부가 고시한 금액(22,500원)을 근거로 교육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환경부 지정 타 교육기관도 해당 고시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회비 완납 회원인 경우 무료로 진행하며, 미납 회원인 경우 환경부 고시금액(22,500원)으로 교육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Q6. 기존에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가?

A6.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은 개설자(한의사) 또는 소속 담당 직원이 먼저 이수한 교육기관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 협회의 경우 19.08.19부터 교육을 시행한 바, 해당 일자부터의 이수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은 'AKOM 보수교육센터 → (상단 카테고리 5개 중) 이수 현황 선택 → (하위 카테고리 4개 중) 법정교육 선택' 순서로 가능하며, 이수 시 이수 내역이 있으며/미이수시 공란(내용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설자(한의사) 및 소속 담당 직원이 환경부 지정 타 교육기관(한국환경보전원, 한국폐기물협회)에서 먼저 이수한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교육기관 사이트 내 로그인을 통한 확인 또는 유선 문의 : 한국환경보전원_1577-7389/한국폐기물협회_02-2680-7080)

Q7. 교육대상자를 지자체에서 지정한다고 하던데?

A7. 지자체에서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교육 이수 현황 파악 등 교육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회원님들께서 동 교육의 이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안내와 별도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을 제출한 날(의료기관 개설 후)부터 1년 이내 최초 1회 실시 및 이후 3년마다의 재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바, 교육 수강을 부탁드립니다

Q8. 우리 협회 교육이 1년 내내 계속 진행되는가?

A8. 관련 법령에서 교육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교육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의 경우 2달간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 종료 다음 달은 교육결과 (환경부) 취합/보고 및 시스템 점검을 위해 휴지기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예시 : 교육진행 1~2월, 4~5월, 7~8월, 10~11월 / 3·6·9·12월은 교육 미운영)

Q9. 우리 협회 온라인 교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A9. 환경부와의 협의에 따라 타 교육기관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준용하여 준비되었습니다. 교육은 총 4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4차시를 9개 파일(소주제)로 구분되어 동영상 교육이 진행되게 되며, 각 파일(소주제)별로 Quiz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차시(9개 파일) 모두를 이수하실 경우 교육이 완료(이수증 출력 가능)되게 됩니다.

Q10. 한방병원, 요양병원, 보건소 등 한의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교육대상자에 해당되는가?

A10.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된 직원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방병원, 요양병원, 보건소 등에 근무하시는 봉직의 또는 의료업무미종사자인 경우에는 동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Q11. 교육기간 동안 수강 중 전체 교육을 미이수 한 경우, 다음 회차에 이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A11. 교육기간 동안 교육과목(4차시, 9개 파일)을 모두 이수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다음 회차 교육 시 이전 회차 교육의 이어듣기를 할 수 없습니다. 교육기간 내 모든 과목 이수가 필요하며, 수강 완료 후 이수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Q12. 이수증을 출력했는데 현재 근무처 정보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12. 우리 협회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교육 이수한 경우, 우리 협회 전산에 등록된 회원정보 내 근무처 정보를 토대로 이수증에 반영하고 있으며, 근무처 정보 수정이 필요할 경우 중앙회 의약무정책국(02-2657-5062)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수증 내 근무처 정보에 대해 '이전 근무처'로 되어 있어 '현재 근무처'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수 일자가 '현재 근무처' 개설일 또는 근무 시작일 '이후'가 되어야 수정이 가능하며, 만약 '이전'일 경우에는 '현재 근무처' 개설일 또는 근무 시작일 이후의 일자로 재교육 후 수정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환경부 지정 타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 내 정보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교육기관 사이트 내 로그인을 통한 확인 또는 유선 문의 : 한국환경보전원_1577-7389/한국폐기물협회_02-2680-7080)